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66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6월 1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05. 30. ~ 2024. 06. 30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황의식	1982.○.30.	0178210274100001776	₩10,515,000	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○○
2	한상열	1965.○.04.	0178200274100004879	₩12,585,000	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 ○○
3	이명환	1961.○.11.	0178200274100006856	₩6,112,500	경상북도 구미시 도봉로 ○○
4	이명환	1961.○.11.	0178200274100010972	₩26,316,000	경상북도 구미시 도봉로 ○○
5	박창수	1997.○.07.	0178200274100006273	₩11,505,000	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○○
6	황덕수	1969.○.21.	0178200274100004032	₩22,302,000	경상북도 경주시 송삼1길 ○○
7	손용석	1969.○.19.	0178200274100002852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○○
8	이연석	1965.○.15.	0178200274100002853	₩19,116,000	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4길 ○○
9	윤상민	1970.○.18.	0178200274100005881	₩31,860,000	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○○
10	이남희	1970.○.05.	0178200274100003621 0178200274100000931	₩13,381,200	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○○
11	이정희	1978.○.20.	0178200274100003656	₩31,860,000	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○○
12	장상현	1964.○.11.	0178200274100003670	₩22,302,000	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○○

13	김금순	1959.○.05.	0178200274100004028	₩31,860,000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○○
14	천호진	1985.○.01.	0178200274100003672	₩22,302,000	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○○
15	유한회사 국채광고	131314-0001261	0178200274100011093	₩14,337,000	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2로 63-2
16	주식회사 유캔	170111-0462531	0178200274100004870	₩12,744,000	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4길 2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7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